

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

2018. 3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왜 금융분야 데이터인가?	1
II.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의 현주소	5
III.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	9
IV. 기대 효과	25
V. 향후 추진계획	26

I. 왜 금융분야 데이터인가?

1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의 의의

◆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됨과 동시에 보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

- 데이터는 지능정보사회에서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자원
 - 사람과 사물이 다각적으로 이어지는 초연결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 주도 경제(Data-driven economy)로 전환이 가속화
 - * 구글, 아마존, 애플, 페이스북, 마이크로소프트, 텐센트, 알리바바 등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곳이 데이터 플랫폼 관련 기업
 - 특히, 대량의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는 빅데이터는 인공지능·사물인터넷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
- 한편, 데이터 주도 경제는 누구나 기회를 갖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, 보다 공정한 시장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
 -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다양한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존재하는 차별적 관행의 완화도 가능
 - * 전세계 CEO의 절반 이상(53%)은 데이터 기반 창업기업(Data-enabled startups)이 기존 비즈니스 영역을 해체하고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다고 응답(15, Capgemini)
- 데이터 수집·분석 등에 특화된 데이터 산업*이 성장함에 따라, 다양한 정보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
 - * 데이터의 생산·유통 및 수집·분석·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 (ex. 데이터 제공·거래업체, 솔루션 업체, 컨설팅 업체 등)
 - 데이터에 기반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*을 통해 청·장년층에 임금 수준, 만족도, 성장 가능성 등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**
 - * 데이터 사이언티스트, 알고리즘 개발자, 빅데이터 수집·저장·솔루션 개발자 등
 - ** 美 구직사이트(Glassdoor)에서 '데이터 분석인력'은 미국내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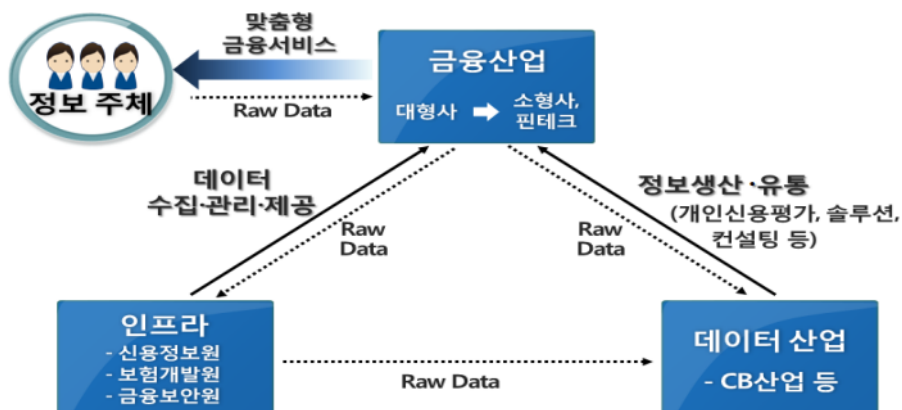
2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

◆ 금융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, 혁신의 혜택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 활용가치가 높은 영역

- 금융분야는 데이터의 경제적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영역
 - 금융분야 데이터는 타 산업 분야에 비해 **집적된 양이 많고 정확도가 매우 높아,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** 것으로 평가
 - * 전세계적으로 금융권에 축적된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 규모의 약 50%('14, Aite)
 - ICT·유통업·보건의료 등 **타 산업과의 융합이 용이***하고 전후방 연관효과도 높아, 경제 전반의 혁신성장에도 이바지
 - * 전세계적으로 금융업-ICT간 M&A는 '10년 223건 → '16년 471건으로 증가(Bloomberg)
- 또한, 금융분야는 데이터 주도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도 **빠르게 체감될** 수 있는 분야
 - 소비·투자 행태, 위험성향 등 **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*** 등을 통해 **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**이 가능
 - * 개인의 긍정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맞춤형 금리상품, 보험료 할인상품 등
- **금융시스템의 포용성 확대**를 위해서도 데이터 산업은 필수적
 - 금융산업은 그 성장 과정에서 여신심사 등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많은 개인·기업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섭
 - 특히, 대표적인 **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인 신용정보산업**(CB: Credit Bureau) 등이 **정보공유·생산** 등을 통해 핵심역할 수행
 - 우리의 경우에도, '03년 카드사태 전후로 **금융권 정보공유 인프라***와 CB사 등을 통한 **개인신용평가 체계**가 안착
 - * 은행연합회(現 신용정보원)를 통해 전 금융업권 개인신용정보가 집중·공유
 - 이를 통해, 담보·보증을 구할 수 없는 **저소득층·금융소외계층**에게도 **평판담보**(Reputation collateral)가 제공되어 신용대출 가능

참고 1 금융분야 데이터의 흐름 및 산업적 특성

- ① 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의 과정에서 본인 데이터를 산업에 제공
 - ② 금융산업은 정보주체, 데이터산업 등에서 제공받은 다양한 데이터 정보를 영업 및 내부경영관리 등에 활용
 - ① 고객의 신용도, 위험 등을 판단하여, 그에 맞는 금융상품을 제공
 - ②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상품, 서비스 개발, 맞춤형 마케팅
 - ③ 위험관리 고도화, 이상거래 감지 등 내부통제 등에도 이용
 - ③ 데이터산업, 인프라는 데이터의 수집, 분석과 정보 생산, 유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 내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격차를 해소
 - ① 금융산업 내 수요에 대응하여 데이터를 수집, 관리, 제공
 - ②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주체의 신용도, 거래능력, 위험도 등을 나타내는 정보를 생산하여 금융산업 등에 제공
 - ③ 금융산업에 위험평가, 관리 모형 등 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관련 기술을 제공 (데이터 솔루션)
 - ④ 고객 데이터가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, 핀테크 업체 등에 대해 데이터 조사, 분석자료 등을 제공 (데이터 컨설팅)
- ※ 금융분야에서는 솔루션, 컨설팅 보다는 **개인신용평가 등 정보 생산·제공**을 핵심업무로 하는 **CB산업을 중심**으로 데이터 산업이 발달



참고 2

신용정보산업(CB산업) 개요

◆ **CB산업**은 대표적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, (i) 금융/재무 데이터의 수집·제공, (ii) 신용등급 생산·제공, (iii) 솔루션 등의 업무 수행
- 수집정보의 종류(개인/기업정보)에 따라 **개인 CB업**과 **기업 CB업**으로 구분

- 1 개인CB업은 고유업무인 개인신용평가와 개인신용정보 수집·제공 등에 수반되는 부수·겸영업무를 수행 중
 - ① (개인신용평가) 다양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금융회사 등에 여신심사 기초로 제공
 - ② (솔루션) 개인 신용위험 평가·관리모형의 개발·판매 업무
 - ③ (본인정보조회) 개인에게 본인신용등급 및 신용정보를 제공
 - ④ (본인인증업무) 아이핀,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
* 정보통신망법상 "본인확인기관" 지정 및 금융위 승인 필요
 - ⑤ (컨설팅) 공공목적의 정보조사 및 데이터 분석·제공 업무
(※ 현행 신용정보법상 영리목적 컨설팅은 금지)
- 2 기업CB업은 기업정보조회서비스 제공 및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조사·제공 업무 등을 주로 수행
 - ① (정보조회) 사업개요, 재무정보, 대표자 정보 등 기업 관련 상세자료를 수집하여 기업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금융산업 등에 제공
 - ② (신용조사) 개별기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·조사하여 일반 기업·공공기관에 제공 → 거래처 및 납품업체 선정에 활용
 - ③ (신용등급제공) 기업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거래상대방 기관에 제공
* cf)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사는 회사채(또는 회사채 발행기업) 등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 제공
 - ④ (기술신용평가(TCB)) 신용등급과 기술평가등급을 평균하여 산출한 기술신용등급을 생산하여 금융회사에 여신심사용으로 제공
 - ⑤ (솔루션 업무) 기업 신용위험 평가·관리모형의 개발·판매 등

Ⅱ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의 현주소

1 현 황

(1) 국내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금융혁신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저조한 상황

□ 해외 주요국 금융시장의 경우 데이터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

○ 美·EU 등의 경우, 신규 금융상품 개발, 위험관리 고도화, 마케팅 등 다양한 부문에서 데이터를 활용 중

* Citi : IBM 슈퍼컴퓨터 '왓슨'을 이용한 중저신용자 대출 심사 정확도 제고

* Progressive (美, 보험사) : 자동차 운행정보를 활용한 보험료 산정 시스템 도입

- 기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*들도 다양한 데이터 분석·활용 등을 통해 금융시장 진입을 가속화

* Lenddo (핀테크기업) : 통신기록·인성검사결과 등을 활용한 대안적인 개인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중·저신용자 고객 기반을 확대

○ 후발주자였던 中國의 경우,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강국으로의 부상을 도모

* 마이뱅크(알리바바 계열), 위뱅크(텐센트 계열)는 통신·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활용, 금융거래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제공

※ Economist(17.7월)는 중국을 '빅데이터 알고리즘 왕국'으로 비유하며 인공지능(AI) 등 미래 新산업시장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

□ 반면, 국내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은 아직까지 초기단계

○ 신용카드·보험업 등 일부 업권에서 마케팅, 보험사기 적발 등에 빅데이터 분석·이용을 하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중

○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시장에 진입하려는 핀테크 업체도 美·EU·中 등에 비해 많지 않은 상황

(2) '금융분야 데이터 산업'의 발달도 미흡하여 금융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미미

□ 신용정보산업의 경우, 그간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구조 및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산업의 발전이 정체된 상황

① 개인 CB시장은 2개사(NICE, KCB)가 국내시장을 사실상 양분* 하는 등 과점 구조가 고착화

* '16년 영업수익(억원) : [NICE] 2,215(75.9%), [KCB] 607(20.8%), [SCI] 97(3.3%)

- CB사는 양질의 개인신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법령상 제한*으로 다양한 데이터 산업 관련 업무가 곤란

* '15년 법개정으로 공공목적 외 영리목적의 데이터 조사·분석 업무가 제한

※ [美國] 대형 3개사(Experian, Equifax, Trans Union) 외에도, 약 400여개의 분야별 특화 CB사가 경쟁하고 있으며, 개인신용평가 업무 외에도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조사·분석·컨설팅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 중

② 기업 CB시장의 경우에도 과점구조* 등으로 발달이 지연되어 금융산업에 대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 기능이 미흡

* '16년 영업수익(억원) : [NICE] 652(36.0%), [KED] 572(31.6%), [이크레더블] 292(16.1%)

※ [美國] 대표적 기업 CB사인 D&B가 약 95% 기업체에 대한 여신정보·부도·소송·담보·세금체납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

□ 평가모형 개발 등 기본적인 데이터 업무와 신용정보업과의 개념구분이 현행법상 불명확한 점도 신규 진입의 제약요인

* 현행 신용정보법은 (i)개인신용평가 등 신용도 판단업무 외에도 (ii) 본인 인증업무, (iii) 평가모형 개발업무까지 허가대상 신용조회업으로 규정

→ 허가가 필요없는 부수업무인 (ii), (iii) 업무도 허가 대상으로 혼동할 소지

2 데이터 활용이 저조한 이유

◆ 낮은 소비자 신뢰와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의 악순환으로
그간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간 균형있는 발전전략이 부재

□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편

※ 금융소비자 설문조사 결과, 금융기관의 소비자보호 실태(총 9개부문) 중 개인정보보호의 적절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가장 낮음('15년, 금융硏)

○ '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여파 등으로 금융권 데이터 활용이 금융회사의 수익에만 기여한다는 인식 등이 상존

- 이에 따라, 데이터 활용을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부족자(Thin filer)를 제도권 금융에 포섭할 기회조차 잃는 모순 발생

□ 또한,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주요국의 추세와는 반대로,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규제를 도입·유지

○ 美·中·EU 등은 문화·법제도적 배경 및 적극적인 정부지원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

- 반면, 우리의 경우 그 전부터 강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정보 보호 규제가 '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더욱 강화

· 한국의 정보보호규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며, 특히 정보제공 동의제도는 전세계적으로도 강한 수준(BBC news, '13.6월)

· 한국의 정보보호 규제수준은 조사대상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보활용에 큰 제약요인(에널리스트 메이슨, '14년)

□ 특히, 정보의 수집·분석 등 데이터 활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크게 제약

① 개인정보의 수집시 엄격한 사전동의를 요구하여 사후거부 방식*(Opt-out)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등에 비해 정보수집에 제약

* 일정기간 내 정보주체의 특별한 거부 조치가 없으면 정보 활용을 허용

② 빅데이터 분석.이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

- 현행 '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'¹⁾은 법적 불확실성¹⁾과 엄격한 비식별조치 요구²⁾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제약 요인

* 개인정보를 비식별화(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.가명처리)하여 분석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식별조치의 기준 제시('16.6월)

※ (참고) 현행 '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'의 한계

- 1) 가이드라인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 → 최근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작업을 한 금융회사·전문기관 등에 대한 형사고발('17.11월) 발생
- 2) 가이드라인에서 다른 비식별 조치 수준이 해외 유수의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비식별정보의 데이터적 유용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
 - 미국 등에서는 의료·교육 분야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요구하는 비식별조치 수준을 금융분야 정보에도 획일적으로 적용

③ 보유 정보, 분석 노하우 등이 풍부한 CB사.카드사 등의 빅데이터 분석.활용 업무가 제한적으로만 수행

* CB사의 민간부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업무는 '15년「신용정보법」개정으로 금지

** 카드사의 경우 부수업무로 수행 가능하나,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에 대한 부담으로 빅데이터 업무에는 소극적

□ 법.제도의 제약 및 문화적 특성 등으로 아직까지 정보분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도 미비한 상황

○ 자유롭게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는 데이터 유통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*, 전문화된 데이터 산업의 발달도 미흡

* 미국의 경우 약 2,500여개 이상의 데이터 중개기관이 존재하며 주요 9개 중개기관의 연간 매출액은 4.3억달러로 추산(美공정거래위원회(FTC), '14)

➔ 현재의 흐름 지속 시, 적극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4차 산업 혁명의 대응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기회를 상실할 우려

-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 간 균형을 회복하는 근본적 정책방향의 전환과 법.제도인프라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이 시급

Ⅲ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

< 기본 원칙 >

①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(Test Bed)로서 우선 추진

-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고, 정보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 감독이 이뤄지는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선도
- 소비자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혁신성장의 모범사례가 되어 빅데이터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을 제고

② 법제도.산업.인프라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

- 정보보호와 활용간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.제도 개선
 - 특히, 빅데이터의 경우 기술혁신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‘원칙중심’(Principles-based approach) 법.제도로 전환
- 민간 데이터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, 공공부문은 보유정보를 활용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
 - 정보가 부족한 핀테크.중소형사 등으로 데이터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데이터 중개.유통 기능을 강화

③ 정보주체의 권리를 내실있게 보호하여 국민신뢰를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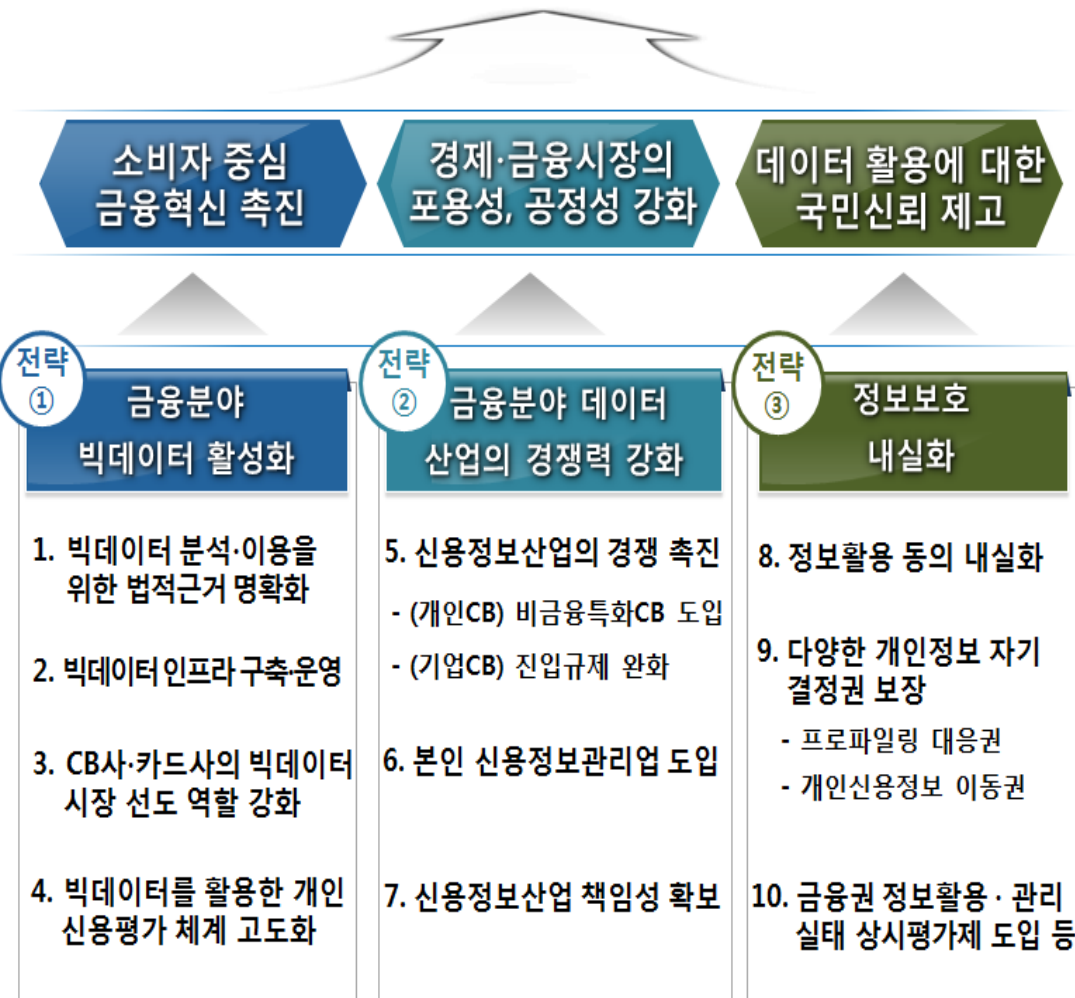
- 그간의 ‘개인정보’ 그 자체를 보호하는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, 정보주체의 ‘개인정보 자기결정권’을 보호
-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권리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보보호.보안의 실효성을 제고

➔ 상기 기본원칙 하에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추진과제를 마련

<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추진과제 >

- ◆ (전략 ①)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법·제도를 합리화하고 분석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**금융분야 빅데이터를 활성화**
- ◆ (전략 ②) **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**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, 책임성 강화 노력을 병행
- ◆ (전략 ③) **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**하고 **정보보호·보안**을 강화하여, 금융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

금융분야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성장과 소비자중심 금융 구현



1. 빅데이터 분석·이용을 위한 법적근거 명확화

◇ 익명정보·가명처리정보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등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여 빅데이터 분석·이용 목적의 활용을 허용

< 현 황 >

-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개별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기초로 하고, 정보보유 기간(최장 5년)도 엄격하게 제한되어,
 -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·이용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*

* 정보보호 규제의 빅데이터 분석 제약

- 빅데이터 분석에 정보가 활용된 모든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것은 과도한 시간·비용이 소요
- 정보보유 기간 제한으로 장기 시계열 분석이 불가능

- 이에 따라 EU·미국 등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노력 및 법·제도 개선이 진행 중
 - 익명화·가명처리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려는 기술적 시도가 등장하고,
 - 비식별 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배제,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·제도 개정

* 美: 의료(HIPAA)·교육(FERPA) , EU: GDPR 제정('16), 日: 개인정보보호법 개정('15)

- 우리의 경우, 가이드라인 형태로 비식별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아직까지 활용도는 미미

< 개선방안 >

□ 해외 입법례,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적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빅데이터 분석·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화

① EU 입법례 등을 감안, 익명정보/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

- (익명정보)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

→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확화하여 자유로운 분석·이용을 보장

- (가명처리정보) 추가적인 정보*를 사용하지 않으면,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

* (예) 암호화 방식의 경우, 특정 개인을 비식별화 하는데 이용되었던 암호키

→ 해당 추가정보의 분리보관을 전제로, 과학연구, 통계작성, 공익목적의 기록보존 등을 위한 이용을 허용 (cf. EU GDPR 사례)

※ 익명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보유기간 등의 규제를 배제

② 원칙 중심 규제를 통해 비식별 기술 발전을 유연하게 수용

-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진행중인 비식별 기술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의 표준화 논의를 적극 수용

※「Privacy enhancing data de-identification techniques」(ISO/IEC DIS 20889)

-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발전을 포섭할 수 있는 원칙 중심의 법제도를 마련

③ 현행 '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'의 일부 성과도 법제화

-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하여 전문기관(금융보안원·신용정보원)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의무 부과

④ 사전·사후규제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의 책임성 강화

- 익명·가명처리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, 재식별행위,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 형사/행정제재 부과

※ 이번 방안 외에, 관련단체·산업계·학계 등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'4차산업혁명위원회'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거쳐 확정

2.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·운영

◇ 공공부문에 집중된 금융정보를 DB화하여 제공하는 한편,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시장 조성을 지원

①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은 보유한 신용정보·보험관련 정보*를 활용하여 표본DB 및 맞춤형 DB를 마련·제공

* 신용정보원 : 전금융권 대출·연체·보증 정보, 체납·회생·파산 정보 등
 보험개발원 : 보험계약·사고·보험금 지급 정보 등

○ 표본 DB*를 제공하여 중소형 금융회사, 창업·핀테크 기업, 연구기관 등이 상품개발·시장분석·연구 등에 활용토록 함

* 보유정보 중 2%(약 74만명)를 무작위 추출한 뒤 비식별조치한 데이터베이스

○ 개별 금융기관 등 이용기관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 항목·범위를 조정한 맞춤형 DB 서비스도 제공

※ 美 주택담보대출 DB 제공 사례

- '98년부터 현재까지 주담대 5%를 무작위 추출하여 대출조건 및 잔액/상환 및 연체정보/담보현황 등 상세정보를 DB화하여 제공
 (연방주택금융청(FHFA)·소비자금융감독원(CFPB) 공동개발)

② 분석도구, 보안체계 등이 갖추어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신용정보원에 구축하여 DB 분석·이용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

○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해 DB를 분석한 뒤, 분석 결과만을 반출·활용토록 하여 정보 유출 가능성도 차단(* Raw-data 반출은 금지)

< 표준 DB 활용 프로세스 >



③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하여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지원

- 우리의 경우, 미국 등과 달리 데이터 중개.유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, 빅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간 미스매칭 발생 우려
- 사전 동의제도, 비식별 제도의 법적근거 미비, 보안문제 등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인 데이터 유통시장 형성이 어려운 상황*

* 과기정통부, LG CNS, SKT 등에서 '데이터 스토어'를 운영 중이나 단순 통계 데이터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수요자(분석자)가 원하는 데이터 유통이 저조

⇒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보유정보·필요정보를 상호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

- 비식별처리된 익명정보 등의 중개를 허용(개인정보는 제외)하고,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보안원이 운영

※ (상세) 데이터 중개플랫폼 운영 개요

- (공급자) 플랫폼을 통해 제공가능한 정보의 요약정보*를 제공
* 데이터 속성, 규모, 이용기간, 분석효과 등을 소개하는 요약 자료
- (수요자) 플랫폼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검색하거나 플랫폼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
- (플랫폼) 공급자와 수요자간 협의완료시 계약 절차 등을 지원



3. CB사·카드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

◇ CB사·카드사가 보유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선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

① CB사에 대해 현행 법령상 금지된 빅데이터 분석·컨설팅 업무를 허용 (현재는 공공목적의 조사·분석업무만 허용)

○ 풍부하게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 및 분석·관리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금융분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견인

* 미국, 영국, 호주 등 해외 우수 국가에서는 CB사들이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여 빅데이터 산업을 선도

○ 빅데이터 관련 업무 뿐만 아니라 평가모델 고도화 등 개인 신용평가 업무와의 시너지 효과*도 기대

* 美 3대 CB사 중 하나인 Experian은 소비자를 인구통계·생애주기·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70여개의 집단으로 세분화 후 컨설팅에 활용

② 카드사도 보유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명확화

* 현행법상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금융위 신고사항이나, 아직까지 빅데이터 관련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

※ 美 VISA의 가맹점에 대한 타겟마케팅 지원사례(“Real time messaging”)

VISA 카드가 고객의 동의하에 타겟 고객의 결제위치·시점·구입품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인근가맹점의 할인쿠폰을 발송하는 프로모션 서비스



4.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고도화

◇ 데이터 공유·활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

① 금융회사의 자체 개인신용평가체계* 고도화 지원

* 금융회사는 여신심사 등을 할 때, CB사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자체 신용평가(CSS : Credit Scoring System) 결과를 함께 활용

○ 현재는 데이터 활용의 제약*으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시스템 고도화에 한계

* CB사 및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정보를 기초로 평가중이며, 통신, 공공요금 등 비금융정보 활용은 제한

⇒ **지주회사 그룹 내 통합 CSS 구축·운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, 비금융·비정형 데이터의 적극 활용***을 유도

* (예) 통신(방통위), 전기·가스(산업부)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기관간 협의추진

② 신용정보원을 통한 긍정적 공공정보의 공유·활용을 확대

○ 현재 공공정보는 세금체납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금융권·CB사에 공유되고 있어,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

⇒ 체납 정보와 함께 세금,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공유될 수 있도록 개선 추진

③ CB·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도 고도화

○ 현재 개인사업자 현황 파악이 어려워* 개인사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개인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

* CB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다 보니 사업자대출을 받지 않고 일반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 개인사업자 여부 확인 곤란
(cf. 일반 가계대출만 보유한 개인사업자는 약 94.3만명 ['16년말])

⇒ **신용정보원이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 여부를 일괄 확인하여 CB사·금융권에 공유** 추진

5.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

◇ CB산업의 업무범위를 세분화·명확화하고, 개별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

① 개인 CB업의 경우,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을 허용

- 분야별 특정 정보만 활용하는 특화 CB사를 도입하여 CB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
- 특화 CB사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제한적*임을 감안하여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

* 특화 CB사의 도입 취지상, 기존의 개인 CB사와 같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제한

※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도입방안 (예시)

- (정의) 비금융부문 개인신용정보(ex. 통신료, 공공요금 납부실적 등)를 활용하여 개인신용점수를 산출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공
- (진입규제 완화) 자본금 요건 완화(예: 현행 50억원 → 개선 10억원) 및 금융기관 출자요건(50% 이상) 배제 등
- (영업행위 규제) 일반 개인CB사와 동일하게 적용(특히, 계열사를 통한 불공정행위, 이해상충행위 등을 철저히 차단)

- 이를 통해,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로 불이익을 받아 왔던 청년층 등 금융이력부족자의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 완화

* 금융정보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도 평가의 세분화 등을 위한 추가지표 등으로 활용 가능

- * (美 PRBC 사례) '02년 설립되어 '06년부터 수도·전기요금 납부 정보 등 비금융정보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여 금융회사에 서비스 제공 중
- * (美 FICO 사례) 통신료·공공요금납부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위험 측정모형 개발('15.4월) → 약 1500만명의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점수를 산출

② 기업 CB업의 경우,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**진입규제를 대폭 완화**

- 현행「신용정보법」은 개인/기업 CB업을 구분하지 않아 기업 CB업도 개인 CB업과 동일한 **진입규제*** 적용

* 자본금 요건 50억원 이상, 금융기관 50% 이상 출자 의무

- 이에 대해 기업 CB업을 **개인정보보호 등 규제 필요성이 큰 개인 CB업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**는 지적

- 기업 CB업의 경우 **기업정보***를 다루고 있으며, 주로 **기업간 거래에 활용되는 만큼**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

* 기업정보는 정보보호가 원칙인 개인정보와 달리 금융시장 정보비대칭 완화를 위해 공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

⇒ 기업 CB업을 **개인 CB업과 분리하고 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, 자본금 규제, 금융권 출자의무** 등을 완화

- 기업 CB업은 개인 CB업과 분리하여, (i) **정보조회**, (ii) **신용조사**, (iii) **신용등급 제공(TCB 포함) 업무**를 **고유업무**로 규정*

* 현재 기업 CB업이 수행중인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규정

- **[정보조회]** 사업개요, 재무정보, 대표자 정보 등 기업정보를 일괄 수집하여 조회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 제공
- **[신용조사]**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·정리하여 일반기업, 공공기관에 제공 → 거래처 및 납품업체 선정에 활용
- **[신용등급제공]** 기업신용등급(기술신용등급(TCB))을 산출·제공

- 유희 자본 보유를 강제하는 **자본금 규제**를 **대폭 완화**(현행 50억원→개선 인가단위별 5억원)하고, **금융기관 출자의무는 배제**

③ 기타 데이터 처리 업무*는 신규 업체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**법령상 CB업의 고유업무에서 제외됨**을 명확화

* 본인인증업무, 평가모형 개발 및 판매(솔루션) 업무 등

6.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도입

- ◇ 본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“본인신용정보관리업”을 도입하고, 일반국민 대상 ‘종합 자산관리서비스업’으로 육성
 -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하고, 정보보호·보안상 안전한 시스템을 활용토록 의무화

< 현 황 >

-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본인정보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관련 서비스업이 확대
 - CB사는 유료고객에 대해 본인 신용등급, 등급산정의 기초가 된 신용정보 상세내역 등을 제공 중(“본인정보조회서비스”)
 - * CB사 본인정보 조회서비스 영업수익 : ‘11년 243억원 → ‘16년 1,406억원
 - 일부 핀테크 업체가 (i) CB와의 제휴, (ii)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에 접속하는 방식 등을 통해 통합 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
- 다만, 아직까지 법.제도 등의 제약으로 인해 핀테크업체의 본인 정보관리 시장 진입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
 - 「신용정보법」상 신용조회업무와의 구분이 불명확
 - * 현행법상 신용조회업의 정의는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→ “정보주체 본인”에게 본인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도 신용조회업으로 해석될 소지
 -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부재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어려움*
 - * 금융회사·CB사 등과의 제휴관계를 기초로 고객정보에 접근할 경우, 계약관계에서 금융회사 등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
 - 정보주체 본인 정보를 일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, **스크래핑 방식(Screen Scraping)*의 보안상 취약성** 등도 문제
 - * 해당 방식을 이용하여 핀테크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로그인정보, 공인인증서 정보를 제공받아 금융회사 고객계좌에 직접 접속하여 정보를 취득

< 개선방안 >

□ 해외사례* 등을 감안, 본인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업을 도입

* Mint사(美 핀테크업체)는 신용등급 및 예금/대출/카드내역 조회서비스, 온라인 가계부, 소득.소비패턴에 맞는 금융상품 추천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

○ (고유업무) 예금, 대출, 카드거래 등의 정보를 망라하는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

⇒ 신용정보 내역 외에도 본인의 소비패턴, 위험성향 등 파악 가능

○ (겸영.부수업무) 로보어드바이저 업무(‘자본시장법’), 대출상품 등 금융상품자문업(‘금융소비자보호법’(안)) 등을 허용

⇒ 고액자산가 외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합리적 가격의 ‘종합자산관리서비스’ 출시가 가능

○ (고객정보 접근권) 핀테크업체 등에게 별도의 제휴·계약관계 없이도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허용

⇒ 정보가 부족한 핀테크업체 등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

○ (진입규제) 자본금요건은 최소화하되(예: 1억원) 정보유출 등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(☞ EU PSD2 사례 등 참고)

□ 정보보호.보안 강화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권리행사(‘개인신용정보이동권’)에 기반해서만 업무를 수행

○ 현재의 스크레이핑 방식을 정보보호·보안측면에서 우월한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 방식*으로 대체

* 해당 방식을 이용하면, 고객이 핀테크업체 등의 본인정보 접근에 동의한 경우 금융기관은 정보조회서비스에 필요한 고객정보만 핀테크업체 등에 전산상 제공

※ EU 제2차 지급결제산업지침(PSD2: Payment Services Directive 2) 사례

✓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핀테크업체에 대해 고객계좌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대신, 로그인정보·공인인증서·OTP 등 개인보안인증자료(Personalised security credentials)의 활용은 엄격히 금지

7. 신용정보산업 책임성 확보

◇ 산업의 특성, 경제·금융시장 영향력, 여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구조 및 행위 규제를 도입

① 개인 CB업은, 국민경제 영향력*을 감안하여 책임성 확보를 강화

* 전국민(약 4,500만명)에 대한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금융기관에 제공

① 여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최대주주 자격심사*, 임원자격, 대주주 변경승인 등「금융회사 지배구조법」상의 규제 전면 적용

*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에 대해 2년마다 금융관련법령,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미충족시 의결권 제한 등 제재

② 개인신용평가지 지켜야 하는 행위규제를 도입

※ 신용조회사 행위규제 필요사항 (예시)

- 성별, 학벌, 출신지역, 직업군 등에 따른 차별 금지
- 평가에 활용되는 주요 평가지표 공개
- 평가주체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 및 이의 제기권 및 절차 보장

② 신용등급 제공업무(TCB 포함)를 수행하는 기업 CB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신용평가지* 수준에 맞추어 규제 도입

* 기업 CB업은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을 산정·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채권 신용평가지와 유사한 수준에서 규율할 필요

① 「자본시장법」상 신용평가지 등에 적용되는 임원 자격, 대주주 변경승인 규제를 도입

②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도 도입

※ (참고)「자본시장법」상 신용평가지 행위규제

- 평가대상에 대해 신평사(계열사 포함)의 상품·서비스 구매 강요 금지
-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 마련
- 신용평가 결과·변동내역·평가 방법론·신용평가서 등 공시 의무화

8.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

◇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보 활용 동의절차를 단순화·내실화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

- ① 정보활용 동의서를 요약정보만 제공*하는 등 대폭 단순화 (고객 요구시 상세정보를 함께 제공)

* (유사사례) 자본시장법상 간이투자설명서 제도

- 집합투자증권 모집·청약 권유 시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로 대체 가능

- ② 개인정보보호 등급제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정보활용 동의 여부 판단시 보조지표로 제공

○ 제3의 기관(예 : 금융보안원)에서 정보의 민감도,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한 평가등급을 산정·제공

- ③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목적별·기관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

* 현재는 일괄 동의관행(무더기 동의)으로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제약

○ 다만, 필수적 동의사항의 경우 선택권 확대 효과보다는 동의 절차만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택적 동의사항에만 도입

※ 추후 엄격한 사전동의제를 완화하여, 제한된 영역부터 사후 거부제 (Opt-out)*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

* 사후에 주기적으로 정보 활용내역을 통지하고 활용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

< 우선 도입 가능 영역(예시) >

- ① 금융지주회사 그룹 내에서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정보 공유시
- ② 당초 거래한 상품과 동종·유사상품에 대한 마케팅 목적의 정보 활용시
- ③ 기술적으로 사전 동의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사물인터넷 분야 등

9.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

◇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등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강화하고, 자기 정보의 활용권을 보장

① ‘프로파일링 대응권’을 도입하여 데이터 처리에 따른 자동화된 의사결정*에 대한 정보주체의 설명요구, 이의제기권 등을 보장

* 프로파일링 (예: 알고리즘에 따른 개인신용평가, 보험료 자동 산정 시스템 등)

○ 이를 통해, 빅데이터 활용의 공정성·투명성 등을 확보하고, 정보침해 우려도 완화하여 데이터 활용 관련 국민신뢰 제고

※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사례

[EU 사례] 인적개입 요구권, 의견 표현권, 설명 요구권, 이의 제기권 등 “프로파일링 대응권”을 도입(GDPR, '18.5월 시행)

[국내] 대표적인 프로파일링 사례인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을 강화한 바 있음('18.1.30일 발표)

② ‘개인신용정보 이동권’(Right to data portability)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본인정보 관리·활용을 보장

*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로 하여금 그 본인 정보를 다른 사업자 또는 그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○ 이를 통해, 소비자가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간편하게 선택·제공받고, 적극적인 신용관리도 가능한 여건을 조성

※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활용 사례

[개인신용평가 관련] 개인이 해당기관에게 본인의 사회보험료, 통신료 납부실적을 CB사·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평가상 가점 수취

[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] 거래 금융기관에게 본인 거래정보를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자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받음

○ 또한,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핀테크업체 등의 관련 시장 진입 여건도 개선하여,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

10.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

◇ 금융권의 정보활용.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고, 데이터 산업 등의 보안조치의무를 강화

① '17년부터 금융권의 신용정보 관리.보호 운영실태* 등에 대한 점검.보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, 아직까지 형식적인 수준**

* 신용정보의 수집.보유.제공.삭제 등에 대한 관리 및 보호 실태 현황 등

** 신용정보 관리.보호인의 단순한 업무수행 실적보고에 그치며, 취약점 평가 및 보완조치 의무 등은 부재

⇒ 금융권의 전반적인 정보활용.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도를 도입하여,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

< 금융권 정보활용.관리 실태 상시평가제 도입방안 >

■ (대상) 금감원 검사 대상인 전체 금융회사 (3,429개*)

* ('16년말 현재) 금융지주(9), 은행(59), 저축은행(80), 여전사(83), 보험(57), 상호금융(2,275), 금투업자(682), 대부업자(148), 신용정보회사 등(32)

■ (점검항목)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8개 대항목* 및 72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점검

* ① 개인신용정보 수집.이용, ② 제공, ③ 처리위탁, ④ 안전한 보관, ⑤ 파기, ⑥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, ⑦ 내부통제, ⑧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

■ (평가방식) 상세 점검항목별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 결과를 점수화.등급화 ⇒ 취약부문 보완조치 요구, 테마검사 실시 등

② CB사 등의 정보보호·보안 관련 규제도 강화

○ CB사 내 데이터 처리 부서와 영업 등 활용부서 간 Chinese wall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

○ 금융위의 금융회사, CB사 등에 대한 포괄적 조치 명령권*을 신설하여, 정보유출·침해사고 등에 대응한 규제 실효성 확보

* 자본시장법(§416), 보험업법(§131) 등에서는 既 도입

IV. 기대 효과

-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통해 융합신산업 등 실물 부문의 혁신성장에도 이바지
 - 혁신적 금융상품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핀테크업체 등의 진입 여건이 개선되면서,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
 - 금융분야 데이터와 보건의료, 인공지능, 자율주행차 등 다른 산업 분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융합신산업 성장도 촉진

-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포용성도 강화
 - 개인의 성향·소비·노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더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환경 마련
 - 특히, 그간 불이익을 겪어왔던 청년·주부·고령층 등의 금융이용 기회가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

- 데이터 생태계를 형성하여 중소형 금융회사, 핀테크, 창업기업 등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공정성을 강화
 - 풍부한 데이터 인프라 및 유통시장이 형성될 경우, 기존 대형금융사의 정보독점이 완화되고 시장내 정보격차가 축소
 - 전문적인 데이터 산업이 육성되어, 정보분석·이용역량이 부족한 핀테크, 영세자영업자에도 관련 서비스가 제공

-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도입되고 정보보호·보안이 실질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금융분야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
 -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하여 정보주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 가능
 -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 위기 상황에도 효율적 대응

V. 향후 추진계획

- 국민의 삶에 데이터기반 금융혁신이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
 - 금년 상반기 중 「신용정보법」 개정을 추진하되,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
 -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의 인프라는 상반기중 구축·시범 서비스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

< 주요과제 추진일정 >

추진 과제		추진 일정	
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	① 빅데이터 분석·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	‘18.上 신정법 개정 추진	
	②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·운영	금융정보 DB ·분석시스템	‘18.下 서비스 실시 및 신정법·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
		빅데이터 중개플랫폼	‘19.上 시범서비스 실시
	③ CB사·카드사의 시장선도 역할 강화	CB사	‘18.上 신정법 개정 추진
		카드사	‘18.下 카드업계 간담회 후 부수업무 신고 등 추진
	④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 고도화	금융회사	‘18.上 관계기관 협의 (필요시 관련법령 등 개정)
신용정보원 정보공유		‘18.上 신정법 개정 추진 및 관계기관 협의	
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	⑤ 신용정보산업의 경쟁 촉진		‘18.上 신정법 개정 추진
	⑥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		‘18.上 신정법 개정 추진
	⑦ CB산업 책임성 확보		‘18.上 신정법 개정 추진
정보보호 내실화	⑧ 정보제공 동의제도 내실화		‘18.下시행 (필요시 법개정)
	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		‘18.上 신정법 개정 추진
	⑩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	정보활용·관리 상시평가제	‘18.上 신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 (필요시 법개정)
그 밖의 정보 보호·보안 강화		‘18.上 신정법 개정 추진	